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구 보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의장
람	

제1323호 2017. 12. 20(수)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539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540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541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 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542호 인천광역시 서구 인터넷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 1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543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 26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544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0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545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546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 ---------- 34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547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 -------- 36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548호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39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549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42

차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550호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4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551호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4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552호 인천광역시 서구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47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928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 49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929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55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930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 ---------- 59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931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 64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932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 82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933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96

차 례

훈 령

○ 인천광역시서구 훈령 제343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 ── 97

○ 인천광역시서구 훈령 제344호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 -110

○ 인천광역시서구 훈령 제345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 개정규정 ---------- 111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홍보미디어과 [032-560-4146]**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7년 12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539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975”를 “999”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956”을 “980”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출장소	동
총 계	999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995	-				
2급	1	1				
4급	6	4	1	1		
5급	60	30	2	6	1	21
6급 이하 계	928	-				
연구직 계	1					
연구사	1	-				
별정직 계	2	-				
5급 상당	-	-				
6급 상당 이하 계	2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7년 12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540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8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검암경서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480(검암동)	인천광역시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제2조 중 별표의 관할구역과 같다
연 희 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간촌로 12(연희동)	
청라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 58(연희동)	
청라 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269(경서동)	
청라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로8번길 5(경서동)	
가정 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420(가정동)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253번길 17(가정동)	
가정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179번길 12-16(가정동)	
신현원창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335번길 3(신현동)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294번길 17(석남동)	
석남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거북로 116(석남동)	
석남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107(석남동)	
가좌 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112번길 10(가좌동)	
가좌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309번길 4(가좌동)	
가좌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57번길 4(가좌동)	
가좌4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280번길 14(가좌동)	
검단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502번길 15(마전동)	
검단 2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814(불로동)	
검단 3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 24(원당동)	
검단 4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167번길 19(당하동)	
검단 5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 49(오류동)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7년 12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541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 고
총무과	1	직원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처리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8조, 제19조, 제20조 -같은 조례 제21조 -같은 조례 제22조 -같은 조례 제23조	
재무과	1	물품불용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가 3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 매각 다. 불용품의 폐기	-지방재정법 제100조 -인천광역시서구물품관리 조례 제16조 -같은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제18조	
위생과	1	**약국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약국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나. **폐업 등의 신고** 다. **약국제제 또는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라. 보고와 검사 등** **마. 시정명령** **바. 업무 개시 명령 등** **사. 폐기 명령 등** **아. 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명령** **자. 시설개수명령 등** **차.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카.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타. 청문** **파. 약사감시원 임명** **하. 등록증 등의 갱신** **거. 과징금 처분** **너. 과태료 부과·징수**	 약사법 제20조 같은법 제22조 같은법 제41조 같은법 제69조 같은법 제69조의4 같은법 제70조 같은법 제71조 같은법 제72조 같은법 제74조 같은법 제75조 같은법 제76조 같은법 제77조 같은법 제78조 같은법 제80조 같은법 제81조 같은법 제98조	
	2	건강증진계획의 수립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주민건강계획의 세부계획수립 나. 주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 수립 보고 등	 -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 고
	3	건강생활의 지원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	-같은 법시행규칙 제3조	
	4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5	보건교육의 실시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건교육 대상사업장, 의료기관, 단체에 대한 보건교육의 계획 및 그 결과에 대한 자료 요청	-같은 법 제12조	
	6	구강건강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구조건강 실태조사 나. 불소용액 양치사업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7	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나. 영양관리 다. 구강건강의 관리 라.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마.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바.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등	-같은 법 제19조	
	8	건강검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9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관련 사무 가. 사회복귀시설의 설치·변경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 나. 사회복귀시설의 폐지·휴지·재개신고 다. 사회복귀시설 설치의 폐쇄등 라. 정신질환자의 계속입원(소)심사 청구 등 마. 정신질환자의 퇴원(소), 임시퇴원(소), 처우개선 명령,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 통지 등 바.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명령 사.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증 발급 아. 정신질환자 진단·치료비용	「정신보건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같은 법 제29조, 제33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같은 법 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 고
		징수 및 통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10	건강검진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건강검진기관의 지정 나. 건강검진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명령 등 다. 청문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2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11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및 변경등록 나.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시정명령 마. 업무 개시 명령 등 바. 폐기 명령 등 사. 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명령 아. 시설개수명령 등 자.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차. 등록취소 카. 청문 타. 등록증 등의 갱신 파. 과징금 처분 하. 과태료 부과·징수	 약사법 제44조의2 같은 법 제44조의2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69조의4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제76조의3 같은 법 제77조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98조	
	12	의약품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허가 및 변경허가 등 나. 의약품유통품질관리기준(KGSP)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시정명령 마. 업무 개시 명령 등 바. 폐기 명령 등 사. 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명령 아. 시설개수명령 등 자.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약사법 제45조 같은법 제47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제7호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69조의4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76조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 고
		차. 청문	같은 법 제77조	
		카. 허가증 등의 갱신	같은 법 제80조	
		타.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81조	
		파. 지위 승계 등	같은 법 제89조	
		하.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98조	
	13	의료기기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판매업 등의 신고 등	의료기기법 제17조	
		나.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32조	
		다. 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 등	같은 법 제34조	
		라. 사용중지명령 등	같은 법 제35조	
		마.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같은 법 제36조	
		바.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38조	
		사. 청문	같은 법 제39조	
		아. 의료기기 감시원 임명	같은 법 제40조	
		자.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위촉 등	같은 법 제40조의2	
		차.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56조	
	14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나. 폐업 등의 신고	같은 법 제13조	
		다.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15조	
		라. 시정명령	같은 법 제23조	
		마. 개설등록의 취소 등	같은 법 제24조	
		바. 청문	같은 법 제26조	
		사.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33조	
	15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나. 폐업 등의 신고	같은 법 제13조	
		다.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15조	
		라. 시정명령	같은 법 제23조	
		마. 개설등록의 취소 등	같은 법 제24조	
		바. 청문	같은 법 제26조	
		사.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33조	
	16	의료기사등의 면허증 회수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17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의료법제16조,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	
		가. 세탁물 처리업 신고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 고
		나. 세탁물처리실적 제출	같은 규칙 제9조	
		다. 지도감독	같은 규칙 제11조	
	18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부속기관의료기관(종합병원·요양병원의 부속의료기관 제외)의 개설신고 및 사항변경	의료법 제33조, 제35조	
		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7조	
		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8조	
		라. 의료기관의 휴·폐업신고	같은 법 제40조	
		마. 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자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같은 법 제56조	
		바. 업무개시 명령	같은 법 제59조	
		사. 보고와 업무 검사 등	같은 법 제61조	
		아. 시정명령 등	같은 법 제63조	
		자. 개설 허가 취소 등	같은 법 제64조	
		차.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67조	
		카. 의료지도원 임명	같은 법 제69조	
		타. 청문 실시	같은 법 제84조	
		파.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92조	
		하. 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같은 법 제27조	
		거. 의료인 단체 설치 신고	같은 법 제28조	
	19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신고 및 사항변경	의료법 제82조	
		나. 휴·폐업신고	같은 법 제82조	
		다. 보고와 검사업무 등	같은 법 제82조	
		라. 시정명령 등	같은 법 제82조	
		마. 청문실시	같은 법 제82조	
		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지도점검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8조	
	20	마약류취급자중 대마재배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섬유나 종자를 채취할 목적의 대마초 재배에 대한 허가·변경 허가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나. 출입·검사와 수거	같은 법 제41조	
		다. 폐기 명령 등	같은 법 제42조	
		라. 업무 보고 등	같은 법 제43조	
		마.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같은 법 제44조	
		바. 청문	같은 법 제45조	
		사. 과징금처분	같은 법 제46조	
		아.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69조	
	21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다음의 권한	시체해부 및 보존에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 고
		가. 시체의 해부에 필요한 사항	관한 법률 제2조	
		나. 시체해부 명령	같은 법 제6조	
		다. 이상 발견 시의 조치	같은 법 제11조	
		라.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21조	
	22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	
		나.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같은 법 제31조	
		다.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및 취소	같은 법 제31조의 3	
		라.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같은 법 제34조	
		마.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같은 법 제35조	
		바.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같은 법 제35조의 2	
		사. 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	같은 법 제44조의 2	
		아. 구급차등의 말소신고 등	같은 법 제44조의 3	
		자. 다른용도에의 사용금지	같은 법 제45조	
		차. 구급차 운행연한	같은 법 제46조의 2	
		카.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같은 법 제47조의 2	
		타. 구급차등의 지도·감독	같은 법 제50조	
		파.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등	같은 법 제55조	
		하. 청문	같은 법 제56조	
		거. 과징금	같은 법 제57조	
	23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설치 ·운영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 포털을 통한 신고 등	같은 규칙 제3조의 2	
		다. 검사결과의 통지 등	같은 규칙 제8조	
		라. 진단용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 신고	같은 규칙 제10조	
		마.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등에 관한 서류의 작성·비치 및 보존에 관한 사항	같은 규칙 제14조	
		바. 지도감독	같은 규칙 제16조	
	24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특수의료장비의 등록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나. 등록사항의 변경통보	같은 규칙 제4조	
		다.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청 등	같은 규칙 제4조의 2	
		라. 검사결과의 등록	같은 규칙 제7조	
	2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마약류 감시원 임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나. 마약류 명예지도원 위촉 등	같은 법 제49조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 고
	26	의료기관 개설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고와 검사 등 나. 폐기 명령 등 다. 의약품 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명령	 약사법 제69조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제72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인터넷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7년 12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542호

인천광역시 서구 인터넷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가 인터넷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서비스”란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에게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

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4.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하며, 소셜미디어 및 그 밖의 인터넷으로 접속 가능한 가상공간을 포함한다.

5. “대표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www.seo.incheon.kr의 주소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6. “부 홈페이지”란 각 부서에서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표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구축한 홈페이지로서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을 총칭한다.

7. “이용자”란 구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8. “인터넷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구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9. “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전자민원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인터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민원창구를 말한다.

10.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11. “소셜미디어”란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 경험 등을 서로 공유하고 참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온라인서비스를 말한다.

12. “소셜미디어기자”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홈페이지 운영

제3조(인터넷서비스의 효율적 관리) ① 구청장은 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이용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관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실태의 조사 결과 이용률이 낮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률 제고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가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또는 운영가치가 낮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서비스의 통합 또는 폐기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인터넷서비스의 유사·중복성
2. 인터넷서비스의 통합 필요성
3. 인터넷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접근 편의성
4. 인터넷서비스의 이용률
5. 그 밖에 인터넷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홈페이지 운영)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구의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문화·관광 등 지역정보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주민 참여유도를 위한 게시판 운영
5. 법령·조례·규칙 등에서 설치대상으로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구청장은 인터넷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시스템 관리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 부서(이하 “담당 부서”라 한다)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③ 인터넷서비스는 연중 지속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양한 수준의 정보이용자와 컴퓨터 환경을 고려하여 웹접근성과 웹표준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구정홍보를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외국어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 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외부전문기관에 외국어의 번역 및 감수와 홈페이지의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소셜미디어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구정홍보, 이용자와의 소통·공감을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문화·예술·체육·축제·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 정보

3. 주민의견·구정상담 등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 담당부서명 등을 표기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정보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관리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관리부서의 장은 자료를 제공받은 후 1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의 양이 과다하거나 처리기간 내에 게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삭제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

3.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

6.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갖게 하는 게시물,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

8.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게시물

9.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

10. 그 밖에 공익을 방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등

제3장 부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제9조(부 홈페이지 구축 시 필수요건) 각 부 홈페이지의 신규 증설은 지양하고, 대표 홈페이지 내 구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별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대표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과 사전협의 후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한다.

1. 주요내용, 개설이유, 개발환경 및 대표 홈페이지와의 연동 관련 사항 등

2. 부 홈페이지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대표 홈페이지와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기하여 구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유지

3. 불필요한 도메인명 생성은 최대한 지양

4. 관리자페이지와 사용자페이지는 분리하여 개발

5. 관리자페이지는 인가된 인터넷 주소에서만 접근

6. 다양한 수준의 이용자와 컴퓨터 환경을 고려하여 웹 접근성과 웹 표준화를 준수하여 제작

제10조(부 홈페이지운영) ① 부 홈페이지 담당부서의 장은 운영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부 홈페이지 담당부서의 장은 부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자료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③ 부 홈페이지 담당부서의 장은 운영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일·주·월 단위의 방문내역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부 홈페이지가 일정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관리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부서 간 협의에 따라 부 홈페이지의 폐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창구 운영

제11조(전자민원창구 설치 · 운영) ① 구청장은 인터넷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자민원창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 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전자민원처리
2. 민원처리의 공개
3. 민원상담

③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3호의 민원상담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신청 대상민원은 본인확인과 첨부 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으로 한정하며, 민원 처리절차 및 비용 등에 대하여 해당 창구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⑥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민원 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처리비용을 구청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12조(민원처리 공개) ① 구청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공개대상민원의 접수·처리과정 및 처리결과를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개되는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민원인과 그 이외의 자에게 달리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민원상담기능 제공) ① 구청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상담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상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실명으로 상담등록을 한 민원사항에 한정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상담 및 답변을 처리한다.

제14조(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구정 참여유도와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하여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게시판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게시판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하

여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소통민원창구 설치 · 운영)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소통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소통민원창구를 운영할 수 있으며, 소통민원창구는 제11조의 전자민원창구에서 제외된다.

② 소통민원창구는 단순 질의·안내·제안·건의 및 즉시 조치가 가능한 불편사항 신고 등에 한하여 운영하며, 즉시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민원처리결과를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제5장 홈페이지 등을 통한 주민참여

제16조(홈페이지 참여공간 운영) 구청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는 게시판 등 참여공간을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이벤트 실시) ① 구청장은 주민의 적극적인 구정참여·홍보, 주민 상호 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이벤트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기념하는 경우
3. 구의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이용활성화를 위한 경우
4. 주민 소셜공간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구민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벤트를 개최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액면가 등 그 밖에 이벤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벤트 시작 전에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소셜미디어 기자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활성화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 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소셜미디어 기자는 정책홍보와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채택된 원고 등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하거나 자원봉사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기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갖게 하는 내용을 기사화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9조(포상) 구청장은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를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공무원 등에게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장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

제20조(개인정보 보호)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터넷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시장조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제21조(인터넷시스템의 보안) ① 인터넷시스템 또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 또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고장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의 보안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벤트 경품제공 기준 (제16조 제2항 관련)

구 분	대 상	방법	제공 액수 한도 (1회당)	횟수/ 제한기준
글・사진・동영상 게시	당첨자/ 참여자	심사/ 추첨	300만원 이하	년 12회 이하
퀴즈 및 게임	정답자	추첨	300만원 이하	년 12회 이하
설문 및 토론	참여자	심사/ 추첨	300만원 이하	년 12회 이하
정기이벤트	당첨자/ 참여자	심사/ 추첨	20만원 이하	주간/월간 정기이벤트
그 외 기타 이벤트	당첨자/ 참여자	심사/ 추첨	200만원 이하	년 12회 이하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7년 12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543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제목 “총 칙”을 “총칙”으로 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제4조제2항 중 “공무원은 “별표 2””를 “공무원은 별표 2”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차별없”을 “차별 없”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그외”를 “그 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이탈하기 못하며”를 “이탈할 수 없으며”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외”를 “그 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체없”을 “지체없”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자는 복무에 관하여”를 “사람의 복무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당해”를 “해당”으로, “통보 하여야”를 “통보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연구기관등”을 “연구기관 등”으로,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복장등)”을 “(복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분증 발급”을 “신분증 발급”으로, “「공무원증규칙」”을 “「공무원증 규칙」”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휴　가”를 “휴가”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직기간이라함은”을 “재직기간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다음해”를 “다음 해”로 한다.

제18조의2 중 “별표 5”를 “별표 4”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연2회”를 “연 2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소속직원”을 “소속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범위안에서 다음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를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으로 하고, 같

은 항 단서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 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 휴직자의 연가일수 = $\frac{12월 - 해당\ 연도\ 휴직기간(월)}{12월}$ × 해당 연도 연가일수

제20조제3항 중 “지참·조퇴”를 “지각·조퇴”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참·조퇴”를 “지각·조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를 “전염병에 걸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요양을 요하는”을 “요양이 필요한”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속직원”을 “소속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8조”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을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만40세”를 “만 40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제1호 및 제2호 중 “미만 :”을 각각 “미만:”으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이상 :”을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만 4세이하(매년 1월 1일 기준)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5조의2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정 치 운 동”을 “정치운동”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3항”을 “법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당의 조직, 조직 및 그 밖의 목적달성을 위한 것

제29조제1항제3호 중 “하기위”를 “하기 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0조 앞에 “제6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30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7년 12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544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제6호 중 “밖의”를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구성하되”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로, “사고가 있을 때에는”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 “ 제17보병사단 507여단 1대대장”을 “ 제17보병사단 507여단 1대대장 및 1대대 서구 지역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9호 중 “인천보훈지청장”을 “국가보훈처 인천보훈지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0호 중 “밖의”를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총무담당간사 :”를 “총무담당간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민방위담당간사 :”를 “민방위담당간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심리전담당간사 :”를 “심리전담당간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작전담당간사 :”를 “작전담당간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정보화담당간사 :”를 “정보화담당간사:”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예비군담당간사 :”를 “예비군담당간사:”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소방담당간사 :”를 “소방담당간사:”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부의할”을 “회의에 부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행정기관간”을 “행정기관 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소속 하”를 “소속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 중 “밖의”를 “밖에”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주민센터내”를 “주민센터 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7년 12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545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구 재정관리"를 "인천광역시 서구 재정관리"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기간만료일"을 "기간 만료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관련분야"를 "관련 분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개회하고"를 "회의를 시작하고"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관련기관"을 "관련 기관"으로, "60일전"을 "60일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50일전"을 "50일 전"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날로"를 "날"로, "의한"을 "따라"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를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소관업무”를 “소관 업무”로 한다.

제10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7년 12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546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 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규정에 따른다.

②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한 행위와 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7년 12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547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인천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 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자동차등록령」제5조 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48조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이라 한다)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서구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등록면허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에 따라 서구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구금고에 예탁한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서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7년 12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548호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로,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를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을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운용 및 관리”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옥외광고

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6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옥외광고물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기금의 운영관리)”를 “(기금의 운용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금고나”를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을 “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개의”를 “회의를 시작”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업무 담당

제12조의 제목 “(관계규정의 준용 등)”을 “(관계 규정의 준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관계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신·구조문대비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7년 12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549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4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무인택배함 등 단지 내 범죄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및 보수
15. 투명한 공동주택 운영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 선거관리위원회 등 자체 운영주체의 회의 공개를 위한 방송장비 설치

제8조제3항 중 “주택관리”를 “주택관리·범죄예방”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7년 12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550호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을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법 시행규칙 제6조”로, “민간기관에서 선정한다”를 “민간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7년 12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551호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정신보건법」 제4조,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정신보건사업”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2.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정신건강증진센터의”를 “정신건강복지센터의”로, “정신건강증진센터(이하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정신보건관련”을 “정신건강증진관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정신보건사업”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예방·정신건강증진·편견해소”를 “예방·정신건강증진·편견 해소”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정신보건사업”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2”를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운영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한 후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하는”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관련분야”를 “관련 분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각각 “정

신건강복지센터”로, 같은 호 중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를 “주의의무”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4조에서 규정한”을 “제4조에 따라”로, “없다.”를 “없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이행하여야 한다.”를 “이행”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시행하여야 한다.”를 “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없다.”를 “없음”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배상하여야 한다.”를 “배상”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년”을 “연”으로 한다.

제13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한국아마추어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7년 12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552호

인천광역시 서구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인천광역시본부 서구지부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협력 가능한 공조 체계를 갖추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동 지원)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인천광역시본부 서구지부 조직과 그 회원 및 하부조직(이하 “아마추어무선단”이라 한다)의 긴급통신사업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사업수행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재해 발생 시 비상 통신 지원
2. 재난재해 발생대비 긴급통신지원을 위한 재난통신 중계기 정비

3. 아마추어무선단의 아마추어무선사 양성교육 사업 지원

4. 축제 및 행사 개최 시 통신 지원

5. 그 밖에 아마추어무선단의 긴급통신사업 지원에 필요한 활동. 다만, 급량비와 차량유지비 등의 단체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아마추어무선단이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조(실적 등의 보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아마추어무선단은 해당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구분한 계산서 및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아마추어무선단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단체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포상) 구청장은 아마추어무선단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비상통신 체제 마련 등 재난안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7년 12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928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인천광역시 서구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보건지소	출장소	동	비고 (행정복지)
총 계	999	632	19	48	16	30	254	(9)
정 무 직 계	1	1						
구 청 장	1	1						
일 반 직 계	995	628	19	48	16	30	254	(9)
2급 소계	1	1						
이 사 관	1	1						
4급 소계	6	4	1	1				
서 기 관	2	1	1					
기 술 서 기 관	2	1		1				
서기관·기술서기관	2	2						
5급 소계	60	30	2	4	2	1	21	
행 정	14	12	2					
의 무	3			2	1			
행정·사회복지	4	4						
행 정 · 공 업	2	2						
행 정 · 녹 지	1						1	
행 정 · 보 건	1	1						
행 정 · 환 경	1	1						
행 정 · 시 설	7	7						
행정·사회복지·공업	2						2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사회복지·녹지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3						3	
행정·사회복지·환경	3						3	
행정·사회복지·시설	4						4	
행정·사회복지·방송통신	1						1	
행 정 · 공 업 · 농 업	3	1					2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보건지소	출장소	동	비고 (행정복지)
행 정 · 녹 지 · 보 건	1						1	
행 정 · 녹 지 · 시 설	2	1					1	
행 정 · 보 건 · 환 경	1	1						
행 정 · 보 건 · 시 설	1						1	
의 무 · 보 건 · 간 호	1				1			
행정 · 공업 · 농업 · 시설	1					1		
행정 · 보건 · 간호 · 의료기술	2			2				
6급 소계	231	159	6	13	4	6	43	
행 정	86	64	4			1	17	
세 무	6	6						
전 산	1	1						
사 회 복 지	7	7						
속 기	1		1					
공 업	6	6						
농 업	1	1						
녹 지	4	4						
수 의	1	1						
보 건	4	3		1				
의 료 기 술	2			2				
간 호	4			3	1			
환 경	6	6						
시 설	18	16				2		
방 송 통 신	1	1						
운 전	5	3	1				1	
기 계 운 영	1	1						
사 무 운 영	1	1						
행 정 · 세 무	12	9					3	
행 정 · 사 회 복 지	28	7					21	
행 정 · 공 업	2	2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보건지소	출장소	동	비고 (행정복지)
행 정 · 농 업	2					1	1	
행 정 · 보 건	3	2				1		
행 정 · 환 경	2	2						
행 정 · 시 설	10	10						
행 정 · 녹 지	1	1						
행 정 · 방 송 통 신	1	1						
녹 지 · 시 설	1	1						
간 호 · 의 료 기 술	3			2	1			
행 정 · 공 업 · 시 설	2	1				1		
행 정 · 보 건 · 간 호	1			1				
행 정 · 보 건 · 환 경	2	2						
보건 · 간호 · 의료기술	4			3	1			
행정 · 보건 · 간호 · 의료기술	1				1			
보건 · 간호 · 의료기술 · 약무	1			1				
7급 소계	322	215	5	15	6	14	67	(1)
행 정	112	66	3			2	41	(1)
세 무	30	30						
전 산	4	4						
사 회 복 지	28	22					6	
속 기	1		1					
공 업	11	9				2		
농 업	2	1				1		
녹 지	6	6						
해 양 수 산	1	1						
보 건	17	11		4	1	1		
의 료 기 술	4			3	1			
간 호	6			5	1			
환 경	11	11						
시 설	45	40				5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보건지소	출장소	동	비고 (행정복지)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3	3						
운전	17	2		1		1	13	
전화상담운영	1	1						
기계운영	2	2						
사무운영	8	1	1			2	4	
행정·사회복지	6	3					3	
보건·간호	1			1				
수의·농업	1	1						
의료기술·식품위생	2			1	1			
보건·간호·의료기술	2				2			
8급 소계	260	163	4	14	3	9	67	(5)
행정	113	69	3	1			40	(5)
세무	11	11						
전산	3	3						
사회복지	36	16					20	
공업	5	5						
농업	1	1						
녹지	6	6						
보건	9	5		2		2		
의료기술	1				1			
간호	5			4	1			
환경	12	12						
시설	30	24				6		
방송통신	3	3						
운전	7	1	1	1			4	
전화상담운영	1	1						
기계운영	1	1						
사무운영	3	2		1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보건지소	출장소	동	비고 (행정복지)
전 산 · 방 송 통 신	1	1						
행 정 · 사 회 복 지	3	1					2	
행 정 · 농 업	1						1	
보 건 · 공 업	1	1						
보 건 · 간 호	1			1				
의 료 기 술 · 식 품 위 생	1				1			
환 경 · 공 업	1					1		
보건 · 의료기술 · 식품위생	3			3				
보건 · 간호 · 의료기술	1			1				
9급 소계	115	56	1	1	1		56	(3)
행 정	47	21	1				25	(3)
세 무	4	4						
사 회 복 지	49	17		1			31	
공 업	2	2						
녹 지	2	2						
보 건	1				1			
환 경	3	3						
시 설	4	4						
방 재 안 전	1	1						
사 무 운 영	1	1						
행 정 · 환 경	1	1						
연 구 직 계	1	1						
기 록 연 구 사	1	1						
별 정 직 계	2	2						
6급 상당 소계	1	1						
비 서	1	1						
7급 상당 소계	1	1						
비 서	1	1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7년 12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929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업지원과와 일자리지원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본청사무분장표(제7조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기업 지원과	1.	노동행정의 계획 수립 시행
	2.	노동단체의 지도 육성
	3.	근로자 복지시설 관리
	4.	지역 내 노사관계 동향파악 및 지원
	5.	지방공업육성을 위한 종합기획 조정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가. 공장 신·증설 및 이전승인
		나. 제조시설설치승인 및 아파트형공장 설립승인
		다. 공장등록 및 등록변경에 관한 사무
		라. 입지기준 확인에 관한 사무
		마. 공장 휴·폐업 신고 및 공장등록증명 발급

		바. 불법 공장 단속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 육성지도에 관한 사무
	8.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업체의 선정추진
	9.	중소기업 창업 민원실의 설치운영
	10.	지식재산기반창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11.	중소기업창업 관련 부담금 면제에 관한 사무
	12.	민속공예산업 육성계획수립 시행
	13.	공예품등 전문생산업체 지원
	14.	품질경영 촉진에 관한 사무
	15.	불법·불량 공산품 지도단속
	16.	해외 판로개척 계획 수립
		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관한 사무
		나. 해외박람회 참가에 관한 사무
		다. 해외 지사화 사업에 관한 사무
	17.	계량기에 관한 사무
	18.	계량증명업등록에 관한 사무
	19.	산업자원동원에 관한 사무
	20.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1.	광공업에 관한 사무
	22.	공업지역 진흥 관련 사무
	23.	구조고도화 사무
	24.	생태산업단지 조성 사무
	25.	혁신산업단지 사무
	26.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무

구본청사무분장표(제7조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일자리	1.	직업소개소 지도감독
지원과	2.	무허가 직업소개행위 단속
	3.	직업안내 사업자와 업무보조원의 교양 및 훈련
	4.	직업소개소 신고 등
	5.	기업&일자리지원센터 운영
		가.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나. 취업교육관 및 채용관 상설 운영
		다. 취업 상담 및 알선
		라.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운영
	6.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가. 연도별 지역일자리 창출계획 수립
		나. 지역일자리 실적 및 평가 관리
	7.	고용복지+센터 운영
	8.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
	9.	공공근로자모집및관리
	10.	실직자구제시책개발
	11.	기타 실업관련 민원처리 상담
	12.	골드세대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13.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정책 시행
	14.	지역형(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사업
	15.	사회적기업및마을기업생산품또는서비스우선구매촉진
	16.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가. 청년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
		나. 청년인턴 사업 추진
		다. 일반계고 및 특성화고 직업지도 프로그램 운영
	17.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18.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19.	협동조합 관련 업무
	20.	생활임금 관련 업무
	21.	지역공동체사업 총괄 기획 및 조정
	22.	마을공동체사업(마을기업,희망마을,공동체정원) 발굴 및 추진
	23.	공동체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연계추진
	24.	노동대책회의 운영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7년 12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930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과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규	비고
위생과	1	성매매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수시 건강진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성매매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5조	
	2	의료기관(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의원, 부속병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허가 및 사항변경	의료법제33조	
	3	마약류 도.소매업자,의료업자,마약류관리자에 관한 다음의 관한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 나. 허가증 등의 교부 및 재교부 다. 마약류취급자의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라. 마약류 양도의 승인 마. 구입서 및 판매서 교부 (마약류 도매업 제외) 바. 사고마약류 등의 처리 사.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아. 허가 등의 제한 자.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차. 출입,검사 및 수거 카. 폐기명령 등 타. 업무보고 등 파.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하.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거. 마약류취급자의 사망, 무능력자가 된 때 및 법인이 해산한 경우 신고 너. 마약류도매업자 마약 등의 판매승인 더. 마약의 도매보고 러. 마약의 소매보고 머. 마약류관리자의 마약류 인계인수 버. 청문 서. 과징금 처분 어. 과태료 부과.징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제9조 제2항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6조제2항 같은 법 제8조제3항 및 제5항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3조제2항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69조	

	4	감염병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역학조사 나. 건강진단 다.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등 라. 감염병위기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등 마. 감염병 관리 시설 평가 바. 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 사.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아. 감염병 환자등의 입원 통지 자. 감염병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차. 감염병의 예방 조치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9조의 2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제49조	
	5	예방접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 나. 예방접종의 공고 다. 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 라. 예방접종증명서 교부 마.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26조의 2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6	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나. 영업의 휴업, 폐업, 폐업신고 다. 영업정지 및 영업취소 라. 소독업자에 대한 기타 행정처분 마. 소독업무의 대행명령 바. 소독실적 보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제59조 같은 법 제58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7조	
	7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감염자의 치료권고 나. 감염자의 치료 및 보호조치등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5조	
	8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나. 산후조리업 신고	모자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제15조	

[별표 3]

출장소장에게재위임하는사항(제2조관련)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건 설 과	1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 도로법 제24조	
노인장애인 복지과	1	공설묘지의 운영관리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경제 에너지과	1	양곡가공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대규모 도정업에 관한 권한제외) 가. 양곡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 나. 청문 다.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권한 라. 과태료 부과징수	 - 양곡관리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같은 법 제28조 - 같은 법 제21조 -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2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중 농지전용신고 대상의 협의에 관한 사항	- 농지법시행령 제39조	
	3	불법농지전용에 관한 사항	- 농지법 제44조	
	4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권한	- 농지법 제38조	
기업지원과	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나.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보고 및 검사 다.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제2항 - 같은 법 제21조 - 같은 법 제28조	
	2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비법정단위 사용에 대한 단속 및 법정단위 표시의 명령 나. 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처리 다. 자체수리자의 지정 및 변경신고의 처리 라. 수입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처리 마. 폐업 등의 신고 수리 바. 등록·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 사. 정기검사 아. 수시검사 자.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차.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취소 카. 정량의 표시 명령 및 표시의 정정 요구 타. 조사 파. 계량기 표시의 개선명령	 -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 같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 -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 -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 같은 법 제12조제1항 - 같은 법 제13조제1항 - 같은 법 제30조제1항 - 같은 법 제31조 - 같은 법 제32조제1항 - 같은 법 제33조제1항 - 같은 법 제42조제1항 - 같은 법 제50조제1항 - 같은 법 제52조제1항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건 설 과	1	도로(점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2개구이상 해당되는 점용허가는 제외)		
		가. 도로점용허가	- 도로법 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나. 도로예정지 점용허가	- 같은 법 제27조	
		다. 접도구역관리	- 같은 법 제40조	
		라. 도로부지점용 권리·의무 승계신고	- 같은 법 제106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50조	
		마.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66조	
		바. 도로점용지의 원상복구 면제승인		
		사. 도로점용공사의 대행	- 같은 법 제73조	
		아. 공작물 설치허가(시도 및 준용도로에 한함)	- 같은 법 제65조 - 같은 법 제61조	
		자. 도로환경정비	- 같은 법 제50조	
		차. 도로부지점용(굴착)허가	- 도로법 61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2	풍수해 응급대책을 위한 시설물자의 사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47조	
	3	도로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도로법」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2조 제1호·제4호 중 차도·보도·측도·배수로·길도랑 유지관리	- 도로법 제31조	
		나. 사도개설허가	- 사도법 제4조	
		다. 도로의 유지·안전점검·보수 등(도로, 비포장도로, 긴급복구, 설해대책)	- 도로법 제50조	
	4	공공하수도의 유지와 공사		
		가. 폭 20M미만 도로의 하수도유지 및 공사관련 사항	- 하수도법 제7조 및 제8조	
		나. 연면적 1,000㎡이하 건축허가에 따른 공공하수도 및 배수시설물의 사용 및 유지와 공사에 관련한 사항		
	5	하수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 하수도법 제20조	
		나. 공공하수도의 감독	- 같은 법 제37조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7년 12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931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구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구세의 징수에 관하여「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보통징수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부과부서의 장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구세를 과세할 경우 징수원인、세액、소속연도、세입과목、납세의무자、납부기한、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부과결정결의서에 따라 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결정액 통지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결정사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부과결정을 한 경우 제2항의 수납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유물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소유 지분
2. 상속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상속 지분
3. 공동사업자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동사업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지분

④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부과부서의 장은 구세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날짜별로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구금고에서 구세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 또는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지받은 경우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의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의 수납부에 소인을 하여 지체 없이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의 소인된 수납부를 통지받은 경우 그 수납세액에 대해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납부결정결의서에 따라 결정을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납세고지서의 작성) 법 제12조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전산으로 작성하여 출력하

여야 한다. 다만, 전산 장애 등으로 전산 출력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소인) 징수부서의 장은 구금고에서 영수필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수납사항을 소인하여야 한다.

제9조(납기마감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자료에 대해 체납부를 작성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고, 해당 체납액이 징수·감액 또는 소멸시효 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관리)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표를 작성하고,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체납처분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세입징수 결과제출) 구청장은「지방회계법 시행령」제30조에 따른 구세의 세입징수보고서를 매월 작성한 후 구금고로부터 통지된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제출기한은 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세입마감) ① 구청장은 매년 12월 15일까지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른 징수결정을 끝내야 하고, 납부기한은 해당 연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 전 징수 등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월의 징수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마감하여야 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부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감하여야 한다.

제13조(구세 미수납액의 이월) ①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구세에 대하여는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에 그 체납내역 등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세 체납액은 결손처리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징수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에 부과결정한 구세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해당 연도의 장부는 마감하여야 한다.

제14조(결손처분) 법 제106조에 따른 결손처분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결손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결손처분표(갑, 을)에 따른다.

제15조(지난 회계연도 결손처분 취소 시 이월액 정리)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결손처분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결손처분의 사후관리)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제17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 구청장이 구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를 인천광역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부과 □ 신고납부 □ 감액 □ 결손] **결정결의서**

징수관			발의	년 월 일 (인)	
			징수부등재	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			납·감액 통지 또는 납세고지서 발부	년 월 일 (인)	
담당			납액통지 제 호	년 월 일 (인)	
담당자			납기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세입과목	관		세입연도	년도 세입	
	항		결정내용	본세	가산금	계
			세액			
	목		가산세			
			결정액			
결정세액	금 원(₩)				
납세인원	시 구 번길 외 명				
적요	년도 월 분 세		수납부 등재	(인)	
			환급금 정리	(인)	
	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				

※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내역서

구분 / 동	과세표준	세율	감액·결손 결정액			납세인원	납액(감액) 통지번호
			계	본세	가산금		

※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부과 · 신고납부 · 감액 · 결손)결정액 통지부

결재			통지 번호	통지 연월일	연도 납기	세목	세액	납세 인원	비고
과장	담당	담당자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세입(부과 · 신고납부 · 감액 · 결손)결정액 통지서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발의일 : 년 월 일

세입징수관 (인)

아래와 같이 세입을 부과 • 신고납부 • 감액 • 결손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목 [ ]세 / 세목구분 [ ] / 구 [ ]

세입연도	세목	세액			납세인원	납부기한	비고
		본세	가산금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수 납 부

과세번호 과세물건 주민(법인)등록번호 납세자명	징수결의일 과표액 전화번호 세목	납기일 수납구분 과세물건지 주소 부과금액 감액/결손 정당세액 은행수납일 수납금액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징 수 부

회계연도 : 년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

구분	연 간 목표액	월까지 목표액	추 경 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비율			지방세환급금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대년간	대월간	대조정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총 합계															
현년도 합계															
소계															
oo세															
oo세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서식]

세목별 체납액 정리부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비 고			
부과년월-동-번호-기분		부과일	최초기한일	가산기한일	○○세	○○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총액	체납액계
압류사항	(중)가산횟수	물건			가산금	가산금	가산금	가산금	가산금	가산금계	

364mm×25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 ○ 이월 체납액 정리부

○○년도 ○ ○기(월)분 (○ ○ 읍·면·동)

과세 번호	세목	본세	과년도 가산금 총계	중가산금												가산금 총누계	수납인	체납자 주소	과세 물건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57mm×364mm(백상지 80g/㎡)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과세물건		전화번호	
		성명	
상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영업장소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세목	연도	납기	과세번호	독촉		체납액						합계
				발부일	납부기한	1차	2차	3차	4차	5차	…	

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	체납자 주소지 약도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체납정리보고			처리전망	조사자
담당자	담당	과장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주거 확인

1. 주민등록 유무
2. 거주사실 유무
3. 행선지
4. 전출구분 : 신고, 무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재산 확인

1. 건축물관리대장 유무
2. 토지대장 유무
3. 차량대장
4. 과세구분자료 : 신고, 직권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생활상태 확인

1. 가옥 : 자가, 전세, 월세
2. 생활상황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여부
3. 기타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재조사 확인

위 사실을 재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결 손 처 분 표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체납자	주소		상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과세 번호	연도	기분	납기	세목	세액			과세물건
					본세	가산금	계	

조사결과

구분	조사내용	조사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주민등록지 조사					
재산조사					
허가 및 기타사항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조사자 (담당자) : (인) : (인) 확인자 (과 장) : (인) : (인)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갑)] (뒤 쪽)

결 손 처 분 표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1.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허가사항, 그 밖의 재산은닉 여부조사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을)]

결 손 처 분 표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과세 번호	연도/ 기분	세목	납세의무자		세액		
			성명	주소	본세	가산금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0호서식]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구서

심의요구번호			심의요구일자	
체납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연락처 :)		

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

세목명	납부기한	체납액			결손처분여부
		본세	가산금	계	

체납요지	
심의청구이유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

인천광역시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붙임 : 증명서류 부.

210mm×297mm(백상지 80g/㎡)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7년 12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932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이하 “구세”라고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구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구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구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구세는 구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구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시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구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

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73조의2에 따른 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자본시장법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일반(등기)우편 송달부

일련번호	세목	연도 기분	과세번호	납세자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세액	주소	반송 사유

※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송달부(교부)

과세번호 납세자명 출력순번 과세물건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납부세액	우편번호 연락처	주소	교부장소	수령인			수령 일자	미교부 사유
					성명	납세자와의 관계	서명		
누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구분	세목	연도/기분	납세의무자		송달지	등기번호	반송일자	반송사유	인수자
			성명	주소					

※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 등 서류명을 기재함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년도 기분 세(서류명 기재) 송달불능부

과세 번호	납세의무자 주소		1차송달		재송달			공시 송달 일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등기번호	반송일	송달지	반송사유	반송일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년도 기분(월분) 세를 다음과 같이 취소(경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결재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부과취소(경정) 내역

세목	연도/기분	당초		취소		경정		차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구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구세 취소·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서식]

지방세 부과취소 · 경정처분 내역

과세 번호	연도/ 기분	납세의무자		주민(법인) 등록번호	세액(본세)					취소· 경정사유
		성명	주소		세목	당초	취소	경정	비고	

※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

일련번호	지방세환급 내역										결재			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								결재			지급필통지사항		
	연도 / 기분	책호 / 번호	세목	지방세환급금			환급대상자		과오납 연월일	사유	담당자	담당	과장	조정 연월일	지방세환급가산금			충당	계좌 경정	명령 번호	지급 명령액	담당자	담장	과장	일자	수령자	대조자 인
				계	본세	가산금	성명	주 소							지방세환급금	지방세환급가산금	계											
월계																											
연도계																											
총 누계																											

구분	지방세환급금 결의액	충당액	계좌 경정액	지급명령액 ①	반송분 ②	실지급명령액 ③ = ① − ②	지급 및 통지액 ④	차감미지급액 ③ − ④	결재		
									담당자	담당	과장
전월까지 누계											
당월계											
연도계											
총 누계											

※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백상지 80g/㎡)

[별지 제8호서식]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

환급금 내역	연도/기분(월)	환급금액	합계	OO세	OO세	OO세	OO세

일련번호	연대납세의무자 주소		동의 (서명·날인)	비고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

결재		발의	년 월 일	(인)
징수관		징수부 등재	년 월 일	(인)
과장		지방세환급금 정리부 등재	년 월 일	(인)
담당		충당통지서 발부	년 월 일	(인)
담당자		통지서번호	년 월 일	(인)

충당금액 (금 원) (₩)

	구분	세입연도	세입과목				환급금 총액	과오납 연월일	환급자	
			관	항	목	과세번호			주소	성명
세입항목										
	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									

	구분	세입연도	세입과목				미납 총액	충당액	납세의무자	
			관	항	목	과세번호			주소	성명
충당내역										
	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									

적요		수납부정리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7년 12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933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

제16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39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7년 12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 훈령 제343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조 관련)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합 계			999	
	정무직	소계	1	
	일반직	소계	995	
		2급	1	행정 1
		4급	6	행정 2, 기술 2, 행정·기술 2
		5급	60	행정 14, 의무 3, 행정·사회복지 4, 행정·보건 1, 행정·환경 1, 행정·시설 7, 행정·공업 2, 행정·녹지 1, 행정·사회복지·공업 2, 행정·사회복지·농업 1, 행정·사회복지·녹지 1, 행정·사회복지·보건 3, 행정·사회복지·환경 3, 행정·사회복지·시설 4, 행정·사회복지·방송통신 1, 행정·공업·농업 3, 행정·녹지·보건 1, 행정·녹지·시설 2, 행정·보건·환경 1, 행정·보건·시설 1, 의무·보건·간호 1, 행정·공업·농업·시설 1,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2
		6급	231	**행정 86**, 세무 6, 전산 1, 사회복지 7, 속기 1, 공업 6, 농업 1, 녹지 4, 수의 1, 보건 4, 의료기술 2, 간호 4, 환경 6, 시설 18, 방송통신 1, 운전 5, 기계운영 1, 사무운영 1, 행정·세무 12, **행정·사회복지 28**, 행정·공업 2, 행정·농업 2, 행정·보건 3, 행정·환경 2, 행정·시설 10, 행정·녹지 1, 행정·방송통신 1, 녹지·시설 1, 간호·의료기술 3, 행정·공업·시설 2, 행정·보건·간호 1, 행정·보건·환경 2, 보건·간호·의료기술 4,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1, 보건·간호·의료기술·약무 1
		7급	322	**행정 112**, **세무 30**, 전산 4, 사회복지 28, 속기 1, 공업 11, 농업 2, 녹지 6, 해양수산 1, 보건 17, 의료기술 4, 간호 6, 환경 11, **시설 45**, 방재안전 1, 방송통신 3, 운전 17, 전화상담운영 1, 기계운영 2, 사무운영 8, 행정·사회복지 6, 보건·간호 1, 수의·농업 1, 의료기술·식품위생 2, 보건·간호·의료기술 2
		8급	260	**행정 113**, **세무 11**, 전산 3, 사회복지 36, 공업 5, 농업 1, 녹지 6, 보건 9, 의료기술 1, 간호 5, 환경 12, **시설 30**, 방송통신 3, 운전 7, 전화상담운영 1, 기계운영 1, 사무운영 3, 전산·방송통신 1, 행정·사회복지 3, 행정·농업 1, 보건·공업 1, 보건·간호 1, 의료기술·식품위생 1, 환경·공업 1, 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 3, 보건·간호·의료기술 1
		9급	115	**행정 47**, 세무 4, **사회복지 49**, 공업 2, 녹지 2, 보건 1, **환경 3**, 시설 4, **방재안전 1**, 사무운영 1, 행정·환경 1,
	별정직	계	2	
		6급	1	일반비서 1
		7급	1	일반비서 1
	연구직	계	1	
		연구사	1	기록연구사 1

구 본 청	계		632	
	정무직	소계	1	
	일반직	소계	628	
		2급	1	행정 1
		4급	4	행정 1, 기술 1, 행정・기술 2
		5급	30	행정 12, 행정・사회복지 4, 행정・공업 2, 행정・보건 1, 행정・환경 1, 행정・시설 7, 행정・공업・농업 1, 행정・녹지・시설 1, 행정・보건・환경 1
		6급	159	행정 64, 세무 6, 전산 1, 사회복지 7, 공업 6, 농업 1, 녹지 4, 수의 1, 보건 3, 환경 6, 시설 16, 방송통신 1, 운전 3, 기계운영 1, 사무운영 1, 행정・세무 9, 행정・사회복지 7, 행정・공업 2, 행정・보건 2, 행정・환경 2, 행정・시설 10, 행정・녹지 1, 행정・방송통신 1, 녹지・시설 1, 행정・공업・시설 1, 행정・보건・환경 2
		7급	215	행정 66, 세무 30, 전산 4, 사회복지 22, 공업 9, 농업 1, 녹지 6, 해양수산 1, 보건 11, 환경 11, 시설 40, 방재안전 1, 방송통신 3, 운전 2, 전화상담운영 1, 기계운영 2, 사무운영 1, 행정・사회복지 3, 수의・농업 1
		8급	163	행정 69, 세무 11, 전산 3, 사회복지 16, 공업 5, 농업 1, 녹지 6, 보건 5, 환경 12, 시설 24, 방송통신 3, 운전 1, 전화상담운영 1, 기계운영 1, 사무운영 2, 전산・방송통신 1, 행정・사회복지 1, 보건・공업 1
		9급	56	행정 21, 세무 4, 사회복지 17, 공업 2, 녹지 2, 환경 3, 시설 4, 방재안전 1, 사무운영 1, 행정・환경 1
	별정직	소계	2	
		6급	1	일반비서 1
		7급	1	일반비서 1
	연구직	소계	1	
		연구사	1	기록연구사 1
의회사무국	일반직	소계	19	
		4급	1	행정 1
		5급	2	행정 2
		6급	6	행정 4, 속기 1, 운전 1
		7급	5	행정 3, 속기 1, 사무운영 1
		8급	4	행정 3, 운전 1
		9급	1	행정 1
보 건 소	일반직	소계	64	
		4급	1	기술 1
		5급	6	의무 3, 의무・보건・간호 1,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2

		6급	17	보건 1, 의료기술 2, 간호 4, 간호·의료기술 3, 행정·보건·간호 1, 보건·간호·의료기술 4,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1, 보건·간호·의료기술·약무 1
		7급	21	보건 5, 의료기술 4, 간호 6, 운전 1, 보건·간호 1, 의료기술·식품위생 2, 보건·간호·의료기술 2
		8급	17	행정 1, 보건 2, 의료기술 1, 간호 5, 운전 1, 사무운영 1, 보건·간호 1, 의료기술·식품위생 1, 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 3, 보건·간호·의료기술 1
		9급	2	사회복지 1, 보건 1
출 장 소	일반직	계	30	
		5급	1	행정·공업·농업·시설 1
		6급	6	행정 1, 시설 2, 행정 ·농업 1, 행정·보건 1, 행정·공업·시설 1
		7급	14	행정 2, 공업 2, 농업 1, 보건 1, 시설 5, 운전 1, 사무운영 2
		8급	9	보건 2, 시설 6, 환경·공업 1
동	일반직	계	254	
		5급	21	행정·녹지 1, 행정·사회복지·공업 2, 행정·사회복지·농업 1, 행정·사회복지·녹지 1, 행정·사회복지·보건 3, 행정·사회복지·환경 3, 행정·사회복지·시설 4, 행정·사회복지·방송통신 1, 행정·공업·농업 2, 행정·녹지·보건 1, 행정·녹지·시설 1, 행정·보건·시설 1
		6급	43	행정 17, 운전 1, 행정·세무 3, 행정·사회복지 21, 행정·농업 1
		7급	67	행정 41(행정복지 1), 사회복지 6, 운전 13, 사무운영 4 행정·사회복지 3
		8급	67	행정 40(행정복지 5), 사회복지 20, 운전 4, 행정·사회복지 2, 행정·농업 1
		9급	56	행정 25(행정복지 3), 사회복지 31

[별표 2]

구 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조 관련)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합 계			632	
기획예산실	일반직	소계	31	
		5급	1	행정 1
		6급	10	행정 6, 시설 2, 방송통신 1, 행정·시설 1
		7급	11	행정 8, 방송통신 2, 전화상담운영 1
		8급	7	행정 2, 시설 2, 방송통신 1, 전화상담운영 1, 전산·방송통신 1
		9급	2	행정 1, 사회복지 1
안전총괄실	일반직	소계	18	
		5급	1	행정·시설 1
		6급	6	행정 3, 행정·시설 2, 행정·방송통신 1
		7급	6	행정 2, 시설 1, 환경 1, 방재안전 1, 방송통신 1
		8급	3	시설 1, 방송통신 2
		9급	2	행정 1, 방재안전 1
감사실	일반직	소계	10	
		5급	1	행정(개방형) 1
		6급	4	행정 3, 사회복지 1
		7급	5	행정 3, 시설 2
총무과		계	29	
	정무직	소계	1	
	일반직	소계	26	
		2급	1	행정 1
		4급	1	행정 1
		5급	2	행정 2
		6급	8	행정 8
		7급	6	행정 5, 운전 1
		8급	8	행정 7, 운전 1
	별정직	소계	2	
		6급	1	일반비서 1
		7급	1	일반비서 1
홍보미디어과	일반직	소계	13	
		5급	1	행정 1
		6급	2	행정 1, 전산 1
		7급	5	행정 1, 전산 4
		8급	4	행정 2, 전산 2
		9급	1	행정 1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재 무 과	일반직	소계	19	
		5급	1	행정 1
		6급	6	행정 3, 운전 1, 시설 1, 기계운영 1
		7급	6	행정 3, 시설 2, 운전 1
		8급	5	행정 5
		9급	1	행정 1
세 무 1 과	일반직	소계	30	
		5급	1	행정 1
		6급	7	세무 3, 행정·세무 4
		7급	15	세무 15
		8급	5	세무 4, 전산 1
		9급	2	세무 2
세 무 2 과	일반직	소계	29	
		5급	1	행정 1
		6급	6	세무 3, 행정·세무 3
		7급	14	세무 14
		8급	6	세무 6
		9급	2	세무 2
민원봉사과		계	20	
	일반직	소계	19	
		5급	1	행정 1
		6급	4	행정 4
		7급	3	행정 3
		8급	9	행정 8, 사무운영 1
		9급	2	행정 2
	연구직	소계	1	
		연구사	1	기록연구사 1
토지정보과	일반직	소계	23	
		5급	1	행정·시설 1
		6급	5	시설 4, 행정·시설 1
		7급	9	행정 2, 시설 7
		8급	6	행정 3, 시설 3
		9급	2	시설 2
생활보장과	일반직	소계	31	
		4급	1	행정·기술 1
		5급	1	행정·사회복지 1
		6급	5	사회복지 2, 행정·사회복지 3
		7급	9	행정 1, 사회복지 7, 행정·사회복지 1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8급	9	사회복지 9
		9급	6	행정9급 1, 사회복지 5
희망복지과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사회복지 1
		6급	3	사회복지 1, 행정・사회복지 2
		7급	7	행정 1, 사회복지 5, 보건 1
		8급	3	사회복지 2, 행정・사회복지 1
		9급	1	사회복지 1
노인장애인복지과	일반직	소계	21	
		5급	1	행정・사회복지 1
		6급	4	행정 1, 사회복지 1, 행정・사회복지 2
		7급	8	행정 1, 사회복지 4, 시설 1, 행정・사회복지 2
		8급	2	사회복지 2
		9급	6	행정 2, 사회복지 4
여성보육과	일반직	소계	22	
		5급	1	행정・사회복지 1
		6급	4	행정 2, 사회복지 2
		7급	6	행정 2, 사회복지 4
		8급	5	행정 2, 사회복지 3
		9급	6	행정 2, 사회복지 4
인재육성과	일반직	소계	18	
		5급	1	행정 1
		6급	6	행정 6
		7급	5	행정 4, 시설 1
		8급	5	행정 5
		9급	1	행정 1
문화관광체육과	일반직	소계	17	
		5급	1	행정 1
		6급	5	행정 5
		7급	4	행정 4
		8급	7	행정 7
경제에너지과	일반직	소계	19	
		4급	1	행정・기술 1
		5급	1	행정・공업・농업 1
		6급	5	행정 2, 공업 1, 농업 1, 수의 1
		7급	9	행정 3, 공업 3, 해양수산 1, 농업 1, 수의・농업 1
		8급	3	행정 1, 농업 1, 시설 1
기업지원과	일반직	소계	12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5급	1	행정・공업 1
		6급	4	공업 2, 행정・공업 1, 행정・공업・시설 1
		7급	4	행정 1, 시설 1, 공업 1, 기계운영 1
		8급	2	공업 2
		9급	1	행정 1
일자리지원과	일반직	소계	16	
		5급	1	행정 1
		6급	3	행정 3
		7급	5	행정 4, 사회복지 1
		8급	5	행정 5
		9급	2	행정 1, 사회복지 1
환경보전과	일반직	소계	31	
		5급	1	행정・환경 1
		6급	7	환경 5, 행정・환경 2
		7급	8	환경 8
		8급	11	행정 2, 환경 7, 보건 1, 공업 1
		9급	4	환경 3, 행정・환경 1
위생과	일반직	소계	18	
		5급	1	행정・보건 1
		6급	5	보건 3, 행정・보건 2
		7급	9	보건 9
		8급	3	보건 2, 보건・공업 1
자원순환과	일반직	소계	23	
		5급	1	행정・보건・환경 1
		6급	6	행정 3, 환경 1, 행정・보건・환경 2
		7급	8	행정 5, 환경 2, 보건 1
		8급	8	행정 1, 환경 5, 보건 2
건설과	일반직	소계	37	
		4급	1	기술 1
		5급	1	행정・시설 1
		6급	10	행정 2, 시설 2, 공업 3, 운전 1, 사무운영 1, 행정・시설 1
		7급	14	행정 3, 시설 6, 공업 3, 기계운영 1, 사무운영 1
		8급	10	행정 1, 시설 6, 공업 2, 기계운영 1
		9급	1	공업 1
건축과	일반직	소계	23	
		5급	1	행정・시설 1
		6급	7	행정 1, 시설 4, 운전 1, 행정・시설 1
		7급	7	사회복지 1, 시설 6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8급	5	행정 1, 시설 4
		9급	3	시설 1, 사회복지 1, 사무운영 1
도시개발과	일반직	소계	23	
		5급	1	행정・시설 1
		6급	6	행정 2, 시설 2, 행정・시설 1, 녹지・시설 1
		7급	10	행정 2, 시설 8
		8급	5	행정 2, 시설 3
		9급	1	시설 1
도시재생경관과	일반직	소계	17	
		5급	1	행정・시설 1
		6급	5	행정 2, 행정・시설 3
		7급	5	행정 1, 시설 4
		8급	5	행정 1, 시설 3, 사무운영 1
		9급	1	행정 1
공원녹지과	일반직	소계	21	
		5급	1	행정・녹지・시설 1
		6급	5	녹지 4, 행정・녹지 1
		7급	6	녹지 6
		8급	6	녹지 6
		9급	3	행정 1, 녹지 2
주차관리과	일반직	소계	17	
		5급	1	행정・시설 1
		6급	5	행정 3, 시설 1, 행정・공업 1
		7급	5	행정 3, 공업 1, 시설 1
		8급	5	행정 4, 시설 1
		9급	1	행정 1
교통민원과	일반직	소계	29	
		5급	1	행정・공업 1
		6급	6	행정 4, 행정・세무 2
		7급	6	행정 4, 세무 1, 공업 1
		8급	11	행정 10, 세무 1
		9급	5	행정 4, 공업 1

[별표 6]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조 관련)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합 계			254	
검암경서동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 · 공업 · 농업 1
		6급	2	행정 1, 행정 · 사회복지 1
		7급	4	행정 2, 사회복지 1, 운전 1
		8급	6	행정 5, 사회복지 1
		9급	2	행정 1(행정복지 1), 사회복지 1
연 희 동	일반직	소계	16	
		5급	1	행정 · 사회복지 · 보건 1
		6급	2	행정 1, 행정 · 사회복지 1
		7급	4	행정 2, 사회복지 1, 운전 1
		8급	3	행정 3
		9급	6	행정 2, 사회복지 4
청 라 1 동	일반직	소계	13	
		5급	1	행정 · 녹지 · 보건 1
		6급	2	행정 · 세무 1, 행정 · 사회복지 1
		7급	4	행정 3(행정복지 1), 사무운영 1
		8급	4	행정 3, 행정 · 사회복지 1
		9급	2	행정 1, 사회복지 1
청 라 2 동	일반직	소계	14	
		5급	1	행정 · 녹지 · 시설 1
		6급	2	행정 1, 행정 · 사회복지 1
		7급	2	행정 2
		8급	6	행정 4, 사회복지 1, 운전 1
		9급	3	행정 1, 사회복지 2
청 라 3 동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 · 녹지 1
		6급	2	행정 1, 행정 · 사회복지 1
		7급	3	행정 2, 사무운영 1
		8급	3	행정 2(행정복지 1), 사회복지 1
		9급	2	행정 1, 사회복지 1
가 정 1 동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 · 사회복지 · 시설 1
		6급	2	행정 1, 행정 · 사회복지 1
		7급	4	행정 2, 사회복지 1, 행정 · 사회복지 1
		8급	2	행정 1, 운전 1
		9급	3	행정 1(행정복지 1), 사회복지 2
가 정 2 동	일반직	소계	10	

		5급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6급	2	행정 1, **행정・사회복지 1**
		7급	1	행정 1
		8급	4	행정 1(행정복지 1), 사회복지 1, 운전 1, 행정・사회복지 1
		9급	2	행정 1, **사회복지 1**
가 정 3 동	일반직	소계	10	
		5급	1	행정・사회복지・녹지 1
		6급	2	행정 1, **행정・사회복지 1**
		7급	2	행정 1, 운전 1
		8급	3	행정 2(행정복지 1), 사회복지 1
		9급	2	행정 1, **사회복지 1**
신현원창동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사회복지・공업 1
		6급	2	행정 1, 행정・사회복지 1
		7급	4	행정 2, 사회복지 1, 운전 1
		8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9급	2	행정 1, 사회복지 1
석 남 1 동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사회복지・환경 1
		6급	2	행정 1, 행정・사회복지 1
		7급	4	행정 2, 운전 1, 행정・사회복지 1
		8급	2	행정 2
		9급	3	행정 1, 사회복지 2
석 남 2 동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사회복지・보건 1
		6급	2	행정 1, 행정・사회복지 1
		7급	3	행정 2, 운전 1
		8급	3	행정 1, 사회복지 2
		9급	2	행정 1, 사회복지 1
석 남 3 동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6급	2	행정 1, 행정・사회복지 1
		7급	3	행정 2, 운전 1
		8급	3	행정 1, 사회복지 2
		9급	2	행정 1, 사회복지 1
가 좌 1 동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사회복지・환경 1
		6급	2	행정・세무 1, 행정・사회복지 1
		7급	2	행정 1, 운전 1
		8급	4	행정 2, 사회복지 2
		9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가 좌 2 동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사회복지・방송통신 1
		6급	2	행정 1, 행정・사회복지 1
		7급	3	행정 2, 사무운영 1
		8급	3	행정 2(행정복지 1), 사회복지 1
		9급	2	행정 1, 사회복지 1
가 좌 3 동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사회복지・공업 1
		6급	2	행정 1, 행정・사회복지 1
		7급	3	행정 2, 운전 1
		8급	2	행정 1, 사회복지 1
		9급	3	행정 2(행정복지 1), 사회복지 1
가 좌 4 동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사회복지・환경 1
		6급	2	행정 1, **행정・사회복지 1**
		7급	3	행정 2, 운전 1
		8급	2	행정 1, 사회복지 1
		9급	3	**행정 1, 사회복지 2**
검 단 1 동	일반직	소계	13	
		5급	1	행정・사회복지・농업 1
		6급	2	행정・농업 1, 행정・사회복지 1
		7급	6	행정 2, 사회복지 1, 운전 1, 사무운영 1 행정・사회복지 1
		8급	2	행정 2
		9급	2	**사회복지 2**
검 단 2 동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6급	3	행정・세무 1, 운전 1, **행정・사회복지 1**
		7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8급	3	행정 1(행정복지 1), 사회복지 1, 행정・농업 1
		9급	2	행정 1, **사회복지 1**
검 단 3 동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보건・시설 1
		6급	2	행정 1, 행정・사회복지 1
		7급	3	행정 2, 운전 1
		8급	2	**행정 1**, 사회복지 1
		9급	3	행정 1, **사회복지 2**
검 단 4 동	일반직	소계	14	
		5급	1	행정・사회복지・보건 1
		6급	2	행정 1, 행정・사회복지 1
		7급	3	행정 3
		8급	5	행정 2, 사회복지 2, 운전 1
		9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검 단 5 동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공업・농업 1
		6급	2	행정 1, 행정・사회복지 1
		7급	3	행정 2, 운전 1
		8급	2	행정 1, 사회복지 1
		9급	4	행정 2, 사회복지 2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7년 12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 훈령 제344호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7년 12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 훈령 제345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공무직근로자 정수표(제8조제2항 관련)

구 분		수행기능별 내역	정 원	비 고
총 계			189	
단순노무원	계		20	
	시설물·장비 유지관리 인부 (시설관리)	소 계	7	
		문서마이크로편집요원	2	민원봉사과
		녹지관리인부	3	공원녹지과
		계측기관리원	1	건설과
		공영주차장관리원	1	주차관리과
	현장공사·작업 등 현업인부 (현업종사)	소 계	5	
		재활용수집·선별원	2	자원순환과
		하수도 준설원	3	건설과
	현장지도단속·감시현장인부 (지도단속)	소 계	3	
		자동차배기가스단속원	1	환경보전과
		광고물철거인부	1	도시재생경관과
		개발제한구역단속원	1	도시개발과
	단순잡역조무인부 (단순조무)	소 계	5	
		비서실, 부속실등 내방 민원 안내요원	4	총무과
			1	의회사무국
행정보조원	계		4	
	의료급여관리사		1	생활보장과
	환경개선부담금체납정리요원		1	환경보전과
	건강생활실천사업		1	보건소
	예방접종사업인부		1	보건소
도로보수원			5	건설과
환경미화원			139	자원순환과
청원경찰		계	21	
		경비청원경찰	20	총무과
		경비청원경찰	1	보건소